의안번호	2200952
의 뢰 인	김선민 의원
회 답 일	2024. 7. 11.
추계번호	24C12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에 따른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 6,811억원, 2029년 2조 1,969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조 5,779억원(연평균 1조 1,156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	4,668	12,885	12,851	30,403	6,081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6,811	7,166	7,797	8,460	9,118	39,352	7,870
추가재정소요 합계	6,811	7,166	12,465	21,345	21,969	55,779	11,156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군 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대체복무요원 포함)**에게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100%를 적용 ※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대체복무요원 미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규정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자녀를 얻은 날**에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무제한) ※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는 병역의무 완료 시점 또는 자녀 출산·입양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밝힌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 변경(출산·입양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 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

- 연금액 증액 효과는 대상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된 추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음

❑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할 A값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을 활용

○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2년 말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는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기초로 산출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거나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본 추계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자 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얻은 자녀부터 개정규정을 적용
- 안 제19조제1항은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자녀 범위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1세 입대하여 19개월 의무복무 후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 상 23세 남성인구 대비 관련 병역 입대자 비율 및 직역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2],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며,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자와 2021년에

1)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2)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복무기간 도중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중도 귀가자)를 모두 포함함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병역 입대자 비율) 2010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1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31.9만명[3])에 2021년 대체복무요원 소집자(548명)[4]를 더한 후 2021년 29세 남성 인구(39.4만명) 대비 비율(80.9%)을 산출하여 적용

○ (직역연금 가입률) 2021년 29세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직역연금 가입자 수(2.9만명) 비율(7.3%)을 적용하여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차감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2021년 중도 귀가[5]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의 복무유형(복무기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연도별·복무유형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연도별·복무유형별 복무기간과 대상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대상자 전체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표 2]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1]	해군 등[2]	공군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3]
2021	18	20	21	21	36	19.0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병무청 제출자료
4) 대체복무요원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0년 18세였고 2021년에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에는 대체복무요원이 없음. 이에 2021년 대체복무요원 수를 포함하여 개정규정을 반영
5)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모두 포함함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의 9%를 적용

[표 3] 군복무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4~2028년

(단위: 천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국민연금 A값(A)	3,150	3,322	3,446	3,575	3,707
보험료 지원 단가(A×9%)	283	299	310	322	334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동 법률안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제도 변경에 따른 총재정소요이며 2027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동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7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월별 군복무 완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군복무 완료자에 대하여 총 19.0개월 지원 기간 중 7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입대 이후부터 지원 둘째 해까지의 기간 중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음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및 지원 시점 추계

(단위: 명)

입대 연도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	지원시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25	215,107	215,107 (7개월)	215,107 (12개월)				
2026	202,888		202,888 (7개월)	202,888 (12개월)			
2027	201,831			201,831 (7개월)	201,831 (12개월)		
2028	186,930				186,930 (7개월)	186,930 (12개월)	
2029	182,452					182,452 (7개월)	182,452 (12개월)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며 지원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668억원, 2029년 1조 2,851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조 403억원(연평균 6,081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군복무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 (안 제18조)	-	-	4,668	12,885	12,851	30,403	6,0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6]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2023년 기준 30~39세 여성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8.0%)을 차감하여 활용

-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출산 순위) 출산 순위별 지원 기간이 12개월로 동일하므로 출산 순위를 고려하지 않음

[표 6]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0세 인구	217,226	217,079	227,833	237,996	247,279
출산자 중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199,848	199,713	209,606	218,956	227,49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년 공표 통계)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6)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단가 및 지원 시점에 관한 가정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의 9%를 적용(위의 [표 3] 참고)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확대(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811억원, 2029년 9,11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조 9,352억원(연평균 7,870억원)으로 추계됨

[표 7]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6,811	7,166	7,797	8,460	9,118	39,352	7,8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